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71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8. 11.
4. 회부일자 : 2021. 8. 18.

II. 제안이유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직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III. 주요내용

1.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정원 조정: 총계 변동 없음
 - 4·5급 정원 증원: 증 2명 (7명 → 9명)
 - 교육지원청 4·5급 정원 증원: 증 2명 (0명 → 2명)
 - 5급 이하 소계 정원 감원: 감 2명 (6,978명 → 6,976명)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별첨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협 의 :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4. 기 타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입법예고(2021. 7. 5. ~ 2021. 7. 26.) 결과: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1]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비용추계: [별첨2]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2719호로 제출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직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직 정원 중 5급 이하를 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4·5급 정원을 2명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의 종류별·직급별 정원기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원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¹⁾, 정원 책정의 기준은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하

1)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도록 규정(정원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되어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4급 이상 상위직급의 공무원 비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평균이하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1] 타시도 일반직 등 공무원 비율 현황

구분	일반직 등 공무원								
	3급	4급	5급 (상당)	소계	6급 (상당) 이하	상위직급 비율			
						3급	4급	5급 (상당)	소계
서울	13	46	324	383	6,583	0.19	0.66	4.65	5.50
부산	8	24	167	199	3364	0.22	0.67	4.69	5.59
대구	7	22	131	160	2390	0.27	0.86	5.14	6.27
인천	6	27	178	211	2960	0.19	0.85	5.61	6.65
광주	5	20	97	122	1532	0.30	1.21	5.86	7.38
대전	5	18	105	128	1632	0.28	1.02	5.97	7.27
울산	6	18	113	137	1501	0.37	1.10	6.90	8.36
세종	3	9	56	68	699	0.39	1.17	7.30	8.87
평균	6.63	23	146.38	176	2582.63	0.28	0.94	5.76	6.99

* 출처: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2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비교분석 정량분석 자료집'(2021.7.6.)

- 더욱이 정원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 이 개정(2020.4.7.)²⁾되면서 교육지원청의 기구는 학생 수가 6만명 이상인 경우 2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바,

교육지원청의 복잡·다양화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일반직 정원 조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시행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일부개정]

[별표3]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개정전		개정후		비고
구분	국	구분	국	
-	-	가. 인구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신설
가. 인구 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6만명 이상인 경우	2국	나. 인구 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2국	기준하향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정원 조정은 통상적으로 매년 초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규모에 따라 이루어져왔고 올해도 이미 한 번의 정원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4·5급에 대한 정원을 시급히 조정해야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현재시점에서 2개 교육지원청만에 대해 별도의 직제 변경없이 직급만 변경할 경우 과장 보직 서기관과 팀장 보직 서기관 간의 업무관계, 팀장 보직 서기관과 팀장 보직 사무관과의 업무관계에 지휘 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더욱이 상위 직급에 부합되는 특별한 직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승진 자리 확보만을 위한 정원 증대로 비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직급을 조정할 경우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직제를 개편한 후 이후에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교육지원청별 인구수 및 학생수 현황

교육지원청	인구수 (기준: 2021.4.)	학교현황(기준: 2020.4.)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동부	730,916	152	2,778	59,435
서부	1,152,501	248	4,749	104,782
남부	1,008,508	223	4,108	85,802
북부	839,995	230	4,564	97,895
중부	500,861	156	2,578	51,580
강동송파	1,126,311	236	5,120	114,730
강서양천	1,029,997	239	4,982	113,637
강남서초	956,111	200	4,434	109,981
동작관악	879,082	171	3,112	66,576
성동광진	635,298	145	2,524	54,958

성북강북	738,904	165	2,988	65,732
본 청				
합계	9,598,484	2,165	41,937	925,108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같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

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과장·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